

세상의 가치를 더하다! 한국감정평가사협회!



공정한 감정평가의 시작

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





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입니다.

협회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란?

-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기관에 관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는 제도입니다.
- 추천제도는 감정평가심사제도를 통해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,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.

축적된 추천 데이터로 업무수행에 적합한 감정평가기관 추천



(참고)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

제5조(감정평가의 의뢰) ① ~ ② (생략)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로 업무 효율성과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세요!



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!
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기관 추천
- 추천의뢰기관에서 감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마련,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선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행정비용이 절감



감정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세요!

- 감정평가 업무수주와 업무수행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 · 공정성 · 객관성 강화
-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심사제도를 통한 사전 검증



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합니다!

- 투명한 추천제도를 위해 감정평가기관 지정·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감사제도 운영
- 객관적인 추천시스템을 통해 선정 방법·기준에 대한 민원 등 사회적 갈등 축소



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!

- 협회는 1990년부터 광범위한 추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추천시스템을 개발 · 구축
- 축적된 감정평가 전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물건 수행에 특성화된 감정평가기관을 추천
- 감정평가심사위원회,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 및 감정평가의 적정성 향상



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!

- 감정평가서 발송 후 추천의뢰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등 감정평가 수행의견서를 받아 피드백 반영

추천의뢰에서 추천기관 만족도 평가까지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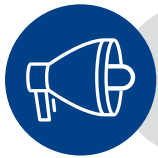
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 업무 흐름도



추천의뢰 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공공단체 등 → 협회)



추천 의뢰물건 검토 및 감정평가기관 결정



감정평가기관 선정·추천 통보 (협회 → 의뢰기관, 선정된 감정평가기관)



감정평가의뢰 (의뢰기관 → 감정평가기관)



감정평가업무수행 (감정평가기관)



감정평가절차 등 결과 심사 (감정평가기관 → 협회)



감정평가서 제출(감정평가기관) / 고객만족도 평가(추천의뢰자 → 협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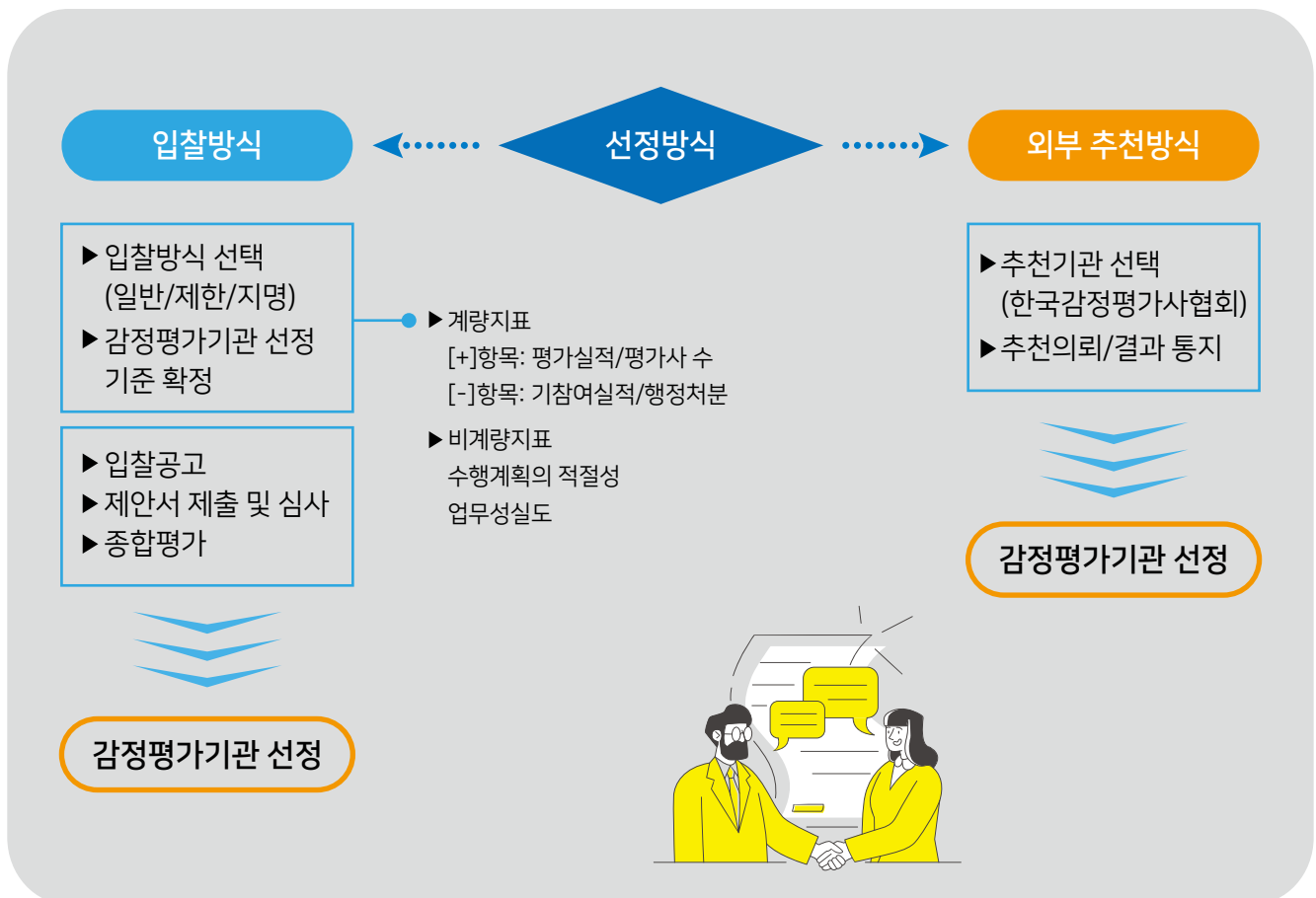


차이점이 될까요?

추천제도와 입찰제도의 차이점



구분	추천제도(감정평가법)	입찰제도(국가계약법)
차이점	• 의뢰기관 부담 완화 • 행정 능률 향상	• 특성·목적에 맞는 평가·선정을 위한 자체기준 마련 필요





담당부서 : 감정평가추천센터

연락처 : 1522-8833

홈페이지 주소 : <https://cts.kapanet.or.kr/>

협회 추천제도 연혁



- 1990

● 1990년 ~
1990년대 중반 ~

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평가(수용·이의 업무위탁)

국유재산법, 공유물품관리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률을 근거로 한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감정평가기관 추천
- 1993

● 1993년

법원행정처 경매·소송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관 추천
- 2013

● 2013년 ~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·도지사 감정평가기관 추천 대행(각 시·도 업무협약 체결)
- 2016

● 2016년 09월 01일 ~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추천의뢰 근거 마련
- 2017

● 2017년 11월 22일 ~

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상평가 등 시스템 연계 및 협회 추천제도 활용
- 2018

● 2018년 05월 25일 ~

국토교통부 용지보상시스템 추천시스템 연계

● 2018년 07월 08일 ~

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, 공공기관에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 활용 협조

● 2018년 12월 21일 ~

한국자산관리공사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위탁재산관리와 매각평가 온라인 연계 및 협회 추천제도 활용
- 2021

● ~ 현재

국토부 국토관리청, 서울특별시 시유재산, 한국도로공사, 국방시설본부 등 지자체, 주요 공공기관 협회 추천제도 활용